

3. 國土利用管理法施行令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建設部公告, 第1993-162號, 1993. 9. 22

1. 개정취지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93. 8. 5. 법률 제4,572호)으로 인하여 개편되는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과 준도시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를 정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권한의 시·도지사 위임범위를 확대하며, 토지거래허가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국토이용계획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토지수급계획은 건설부장관이 5년단위로 수립·정비하되, 동 계획에는 용도지역별 가용토지 공급계획, 농지·산지 및 간척지 활용계획, 용도지역 변경계획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나. 건설부장관은 준도시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취락지구·휴양지구·집단묘지지구·시설용지지구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함.

다. 준도시지역안에서는 용도가 세분·지정된 목적에 맞게 행위를 제한하고, 준농림지역안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배출시설중 1종 내지 3종에 해당하는 시설, 부지의 총면적이 3만 제곱미터이상인 시설·건축물의 설치를 제한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시설이나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의 설치 등 일부 토지이용행위를 허용함.

라. 허가구역 지정요건중 투기가 성행하

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지역,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등으로 구체화 함.

마. 현재는 허가구역안에서 허가대상인 토지를 일정면적이하로 분할하여 거래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공공목적으로 분할된 경우와 공동주택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함.

바. 허가구역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실수요자의 범위를 당해 시·군 거주자외에 그 지역과 연결된 시·군 거주자 등도 포함되도록 확대함.

사. 허가구역안에서 공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체용토지의 취득을 허용하고, 도로·공원등에 편입되어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발·이용행위가 제한·금지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상보존용 취득을

허용함.

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자.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권한의 시·도 지사에 대한 위임범위를 현재 30만제곱미터미만에서 1제곱킬로미터미만까지 확대함.

3.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세워서 작성)를 건설부장관(참조: 토지이용계획과장, 전화 503-73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내몸같이 깨끗하게 내집같이 아름답게